

## 최근 대 이란 제재조치 및 교역 동향

### 1. 이란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제재 동향

#### □ UN, EU 등의 추가 제재 조치

- UN은 2010년 6월에 안보리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호를 채택하여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음.
  - 무기 수출 금지조치의 연장·확대,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 금지,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검색 가능 등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는 2010년 7월에 대 이란 금융거래 사전 허가제를 포함한 추가 제재조치를, 9월에 일본도 금융제재 대상(88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각각 발표하였음.

#### □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

- 2010년 7월에 미국은 '포괄적 이란 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을 발효시켰음.
  - 1996년 제정된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보다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란에 정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및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

- 동법의 발효로 이란의 원유·가스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강도가 강화되었음.

## □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협상 진행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은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이란과 핵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들 6개국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음.
- 현재까지 추가적인 협상 계획은 없으나,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화할 경우 협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수입 제한을 포함한 대 이란 추가 제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 우리나라의 대 이란 제재 조치

### □ UN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 발표

- 2010년 9월에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결정·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대 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음.
-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Bank Mellat)을 포함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었음.
- 또한 안보리 결의 상 이란의 핵·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명시된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음.

< 표 1 >

우리 정부의 대 이란 추가 제재 조치

구 분	내 용
금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단체 102개, 개인 24명)</li> <li>▪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및 신고제 도입</li> <li>▪ 신규 지점 개설 금지</li> <li>▪ 코레스(Corres)관계 신설 금지</li> <li>▪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li> <li>▪ 국채 매매 금지</li> <li>▪ 보험 및 재보험 거래 금지</li> </ul>
무역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이란 수출보증 축소</li> <li>▪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금지</li> </ul>
운송 및 여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항공기 검색 강화</li> <li>▪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 및 화물항공기 지원 금지</li> <li>▪ 화물항공기 국내공항 접근금지</li> <li>▪ 제재대상자의 여행제한</li> </ul>
에너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li> </ul>

자료: 무역협회.

□ 금융거래 사전 신고·허가제

○ 2011년 1월 1일부터 ‘이란 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신고·허가제도’가 도입되었음.

- 적용 범위 : 거주자(국내 외국환은행 포함)와 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닌 이란 거주 개인·이란 소재 단체와의 지급 및 영수

※ 이란 관련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됨.

- 신고 대상 거래 : 건당 1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

허가 대상 거래 : 건당 4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

(건당 1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를 12개월 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

○ 단, 이란 관련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식료품, 의료 장비, 의료 서비스, 인도적 목적 거래, 한국 및 이란 주재 공관의 운영 경비·인건비와 관련된 지급 및 영수는 사전 신고·허가가 면제됨.

- 사전 신고·허가를 면제받은 지급 및 영수 내역은 지급 및 영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을 통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되어야 함

< 표 2 >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 와의 비교

구분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	이란 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신고·허가제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총재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총재 <u>신고 또는 허가</u></li> </ul>
거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영수에 대해 적용</li> <li>모든 개인·단체와의 지급·영수에 대해 적용</li> <li>* 상대방이 이란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이면 허가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닌 자와의</u> 지급·영수에 대해 적용</li> <li><u>이란 거주 개인 및 이란 소재 단체</u> 와의 지급·영수에 대해서만 적용</li> </ul>
거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영수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만유로 이상(신고) 또는 4만유로 이상(허가)</u> 지급·영수시에만 적용</li> </ul>
면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및 이란 주재 공관의 운영 경비와 인건비 송금 등을 위한 지급·영수는 허가 면제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관련 거래, 인도적 목적 거래, 한국 및 이란주재 공관 운영경비와 인건비 송금 등을 위한 지급·영수는 신고·허가 면제</u></li> </ul>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 (2010년 9월 9일부터 강화* 시행)</li> <li>* 2010년 9월 9일 이란의 개인 24명과 이란 단체 102개(이란혁명수비대,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은행 등)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u></li> </ul>

자료: 한국은행.

### 3. 대 이란 무역거래 결제 방법

#### □ 대 이란 자금거래 경로 경색

- 국제적 제재 조치가 확산되어 대 이란 자금거래는 갈수록 경색되었음.
  - 일부 중소기업이 제3국(독일, 프랑스)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여 왔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장매입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등 부담이 생겼음.
- 2010년 9월에 정부가 이란 관련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이란과의 자금거래 결제가 불가능해짐.

#### □ 대 이란 원화자금 결제 라인 신설

- 정부는 국내 기업의 정상적, 합법적 대 이란 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2개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를 개설하여 수출입 대금의 결제 라인을 확보하였음.
  - 국내 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을 원화로 동 계좌에 입금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동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란 관련 자금거래는 원화 결제만 가능하며, 원화 결제 거래가 가능한 이란계 은행은 총 10개임.(기업은행 6개, 우리은행 6개: 중복 2개)

<표 3>

원화 결제 거래가 가능한 이란계 은행

우리은행 (6개)	기업은행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ank Tejarat</li><li>▪ Bank of Industry and Mine</li><li>▪ Bank Keshavarzi</li><li>▪ Parsian Bank</li><li>▪ Bank Eghtesad Novin</li><li>▪ Karafarin Bank</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ank Tejarat</li><li>▪ Bank of Industry and Mine</li><li>▪ Bank Maskan</li><li>▪ Saman Bank Corp.</li><li>▪ Bank Pasargad</li><li>▪ Sarmaye Bank</li></ul>

- 2010년 9월 30일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2010년 10월 18일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수입대금이 최초로 지급되었음.

#### 4. 제재 이후 대 이란 교역 동향

##### □ 수출입 규모 감소 추세

- 2010년 6월에 UN의 안보리 결의 1929호, 7월에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등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연이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 이란 교역 규모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대 이란 수출액은 2010년 1~7월에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하였으나, 8~12월에는 13.7% 감소하였음.
- 대 이란 수입액도 2010년 1~7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하였으나, 8~12월에는 14.7% 감소하였음.

< 표 4 >

#### 우리나라의 대 이란 교역 추이(2010년)

(천 달러, %)

구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1월	366,975	41.4	667,427	53.6
2월	372,595	40.8	580,195	59.9
3월	427,642	58.3	667,843	95.9
4월	439,115	64.0	837,301	63.8
5월	491,871	67.8	610,846	88.8
6월	456,536	24.8	652,694	37.3
7월	362,256	11.7	450,010	13.4
<b>8월</b>	<b>240,305</b>	<b>-22.1</b>	<b>618,902</b>	<b>9.8</b>
<b>9월</b>	<b>239,565</b>	<b>-39.0</b>	<b>527,306</b>	<b>-10.2</b>
<b>10월</b>	<b>325,447</b>	<b>-9.8</b>	<b>294,993</b>	<b>-35.6</b>
<b>11월</b>	<b>411,480</b>	<b>12.3</b>	<b>469,955</b>	<b>-31.0</b>
<b>12월</b>	<b>462,933</b>	<b>-10.6</b>	<b>562,764</b>	<b>-7.9</b>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 우리나라가 이란에 대한 재수출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UAE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 □ 플랜트 시장 진출 위축

- 이란은 풍부한 원유(2009년 기준 확인매장량 1,376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의 10.3%, 3위)와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046조 ft<sup>3</sup>, 전세계 매장량의 15.8%, 2위)를 보유한 에너지 강국으로 각국의 대형 플랜트 기업들의 경쟁의 장이 되어 왔음.
  - 대림산업, GS건설 등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사우스 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 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
- 대 이란 추가 제재조치에 따라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 및 정유 제품 생산 확대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주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플랜트 시장 진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GS건설이 2009년 10월에 수주하였던 대형 가스전 개발사업(1.4조원 규모) 계약이 2010년 7월에 취소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금융제재로 인해 대금 회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조사역 이현정(☎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mailto:lhj0316@koreaexim.go.kr)